

학교법인	학교법인웅지학원 정관	문서번호	1-1-01(A)-0
		제정일자	03.03.05
		최근개정	23.02.08
		주관부서	학교법인 법인사무국
		홈페이지공개	공 개

학교법인웅지학원 법인사무국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회계·세무 전문 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02.08.>

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학교법인 웅지학원 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 이라 한다.

제3조(설치학교)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·경영한다.

1. 웅지세무대학교 <개정 2012.10.25., 2023.02.08>

제4조(주소) 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 144번길 73에 둔다.

<개정 2012.03.16., 2017.05.26.>

제5조(정관의 변경)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09.21., 2012.07.25.>

② 제1항으로 보고한 정관에 대하여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거나 변경하고, 그 사실을 관할청에 보고한다. <신설 2012.07.25.>

제2장 자산과 회계

제1절 자산

제6조(자산의 구분)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. <개정 2009.09.21.>

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7조(재산의 관리)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매도·증여·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

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8조(경비와 유지방법)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2절 회계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.
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.
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.

제10조(예산외의 채무부담)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11조(세계잉여금의 처리)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 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.

제12조(회계연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12조의2(예·결산보고 및 공시)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,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. <신설 2006.11.09.>

제3절 예산·결산자문위원회

~~제13조 삭제 <2006.11.09.>~~

~~제14조 삭제 <2006.11.09.>~~

~~제15조 삭제 <2006.11.09.>~~

~~제16조 삭제 <2006.11.09.>~~

~~제17조 삭제 <2006.11.09.>~~

제3장 기관

제1절 임원

제1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 7인 (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)
2. 감사 2인

제19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.

1. 이사 4년
2. 감사 2년 단, 1회에 한하여 중임가능 <개정 2006.11.09.>

② ~~삭제~~ <2006.11.09.>

제20조(임원의 선임방법)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 이 경우 임원의 성명·나이·임기·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11.09.>

② ~~삭제~~ <2006.11.09.>

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
④ ~~삭제~~ <2006.11.09.>

제20조의2(개방이사의 자격) ①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한다. <신설 2006.11.09.>

제20조의3(개방이사의 정수) ①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. <신설 2006.11.09.>

제20조의4(개방이사의 선임)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(재직 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)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09.21.>

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.

③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09.21.>

④ 그 밖에 대학평의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 <신설 2006.11.09.>

제20조의5(추천위원회)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.

- ② 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: 3인
 2.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: 2인
-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-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<신설 2009.09.21.>

- 제21조(임원선임의 제한)**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. 다만,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미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06.11.09.>
-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06.11.09.>
- ③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. <개정 2006.11.09.>
-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「민법」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.<개정 2006.11.09., 2021.05.27.>
-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추천한 자를 선임한다. <개정 2006.11.09., 2009.09.21.>
-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. <신설 2006.11.09.>
-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<신설 2006.11.09.>
1.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.
 2.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.
 3.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자.

- 제21조의2(상근임원의 임명)**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상근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.
- ② 상근임원은 1명으로 한다.
- ③ 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. <신설 2006.11.09.>

- 제22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등)**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. <개정 2006.11.09.>
-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③ ~~삭제~~ <2009.09.21.>

- 제23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**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- 제24조(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)**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~~제25조 삭제 <2006.11.09.>~~

- 제26조(임원의 겸직금지)**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. <개정 2006.11.09., 2009.09.21.>
-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.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.
 - ③ 감사는 이사장,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(그 학교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)을 겸할 수 없다.
 - ④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의거하여 겸임교원, 명예교수는 겸직금지 대상에 미포함 한다. <개정 2022.11.15.>

제2절 이사회

- 제27조(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)**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 1. 학교법인의 예산·결산·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·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3.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
 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5.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단,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7.08.22.>
 6.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
 7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 8.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-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- 제28조(이사회 회의 및 의결정족수)**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. <개정 2006.11.09.>
-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06.11.09.>
 - ③ 이사회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2.07.25.>

제29조(이사회 의결제척사유) 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관계 되는 사항

제30조(이사회 소집)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제30조의2(이사회 회의록 공개)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06.11.09., 2009.09.21.>

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. <신설 2009.09.21.>

제31조(이사회소집특례)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.
 2.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.
-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6.11.09.>

제31조의2(대학평의위원회 설치) 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(이하 "평의위원회" 라 한다)를 설치한다. <신설 2006.11.09.>

제31조의3(평의위원회의 구성) ① 평의위원회는 대학의 교원, 직원,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,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, 이를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.

② 평의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, 각 구성단위별 정수는 아래와 같다.

1. 교원 : 3명
2. 직원 : 3명
3. 학생 : 1명
4. 동문 : 2명
5.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: 2명

③ 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2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

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. <신설 2006.11.09.>

제31조의4(평의원회 의장 등) ① 평의원회에 의장 1인을 둔다.

②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

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재하고 의장 유고시는 의장이 지명한 의원이 이를 대리한다. <신설 2006.11.09.>

제31조의5(평의원의 임기)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평의원에 임명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촉된다. 다만, 보궐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<개정 2018.10.30.>

제31조의6(평의원회의 소집) 평의원회는 대학의 장 또는 재적평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. <신설 2006.11.09.>

제31조의7(평의원회의 기능)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. <개정 2006.11.09., 2009.09.21.>

1.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3.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4.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5.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7.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1조의8(운영규정)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.

<신설 2006.11.09.>

제4장 수익사업

제32조(수익사업의 종류) 이 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부동산 임대
2. 기타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항

제33조(수익사업의 명칭)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웅지학원 사업소를 경영한다.

제34조(수익사업체의 주소) 제33조의 수익사업체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길 76에 둔다.

<개정 2012.03.16.>

- 제35조(관리인)**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.
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, 복무,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.

제5장 해산

제36조(해산)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2.07.25.>

제37조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 된 후 다른 학교 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. <개정 2012.07.25., 2018.12.26.>

제38조(청산인)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2.07.25.>

제6장 교직원

제1절 교원

제1관 임명

- 제39조(임용)** ① 학교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대학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. 다만,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4.05.14., 2006.11.09., 2023.02.08.>
- ② 총장의 임기는 최대 2년 이내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
 <개정 2006.11.09, 2009.09.21., 2014.02.27., 2023.02.08.>
- ③ 총장이 임기 중에 정년 도래시는 정년을 우선 적용한다.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기를 연장 시킬 수 있다. <신설 2014.02.27., 2023.02.08.>
- ④ 제1항 이외의 교원 중 조교수, 부교수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 후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고,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(이하 교수)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.
 <개정 2004.03.16., 2006.11.09., 2012.07.25., 2018.10.30., 2023.02.08.>
- ⑤ 제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총장이 임용한다. 이 경우 당해 총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11.09., 2015.11.18., 2023.02.08.>
- ⑥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, 처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.

<개정 2009.09.21.>

⑦ 제1항,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6.11.09., 2015.11.18., 2023.02.08.>

제39조의2(교원의 계약제 임용) ① 정관 제3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여 행한다.

<개정 2005.02.28, 2006.11.09., 2015.11.18., 2023.02.08>

1. 근무기간 (단, 계약기간은 교원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)
 - 가. 교수 : 정관 제47조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,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(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)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. <개정 2010.03.15.>
 - 나. 부교수 :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.
 - 다. 조교수 :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. <개정 2012.07.25.>
2. 급여 : 업무의 곤란도,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3. 근무조건 :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.
4. 업적 및 성과 :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,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.
5. 재계약 조건 및 절차 :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.
6.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. <개정 2017.08.22., 2023.02.08>

② ~~삭제~~ <2015.11.18.>

③ ~~삭제~~ <2015.11.18.>

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조건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원의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조건을 충족하는 교원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한다. <개정 2015.11.18., 2016.05.19.>

~~제39조의3 삭제~~ <2006.11.09.>

제39조의4(특별채용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, 교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장은 기간을 정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.

1.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한 때.
 2. 교원이 파견, 연수, 정직, 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한 때.
 3. 임용 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, 근무실적 또는 기타 자질이 우수하여 학교에 꼭 필요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.
 4. 교육경력,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
 5. 타 우수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본 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3년의

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다만,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.

③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2항은 준용한다. <신설 2015.11.18., 2016.05.18.>

④ 총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원을 임명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05.18., 2023.02.08>

~~제39조의5-겸임교원 등 삭제 <2005.02.28.>~~

제2관 신분보장

제40조(휴직의 사유)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6.11.09.>

1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
2.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된 때
3. 천재지변 또는 전시·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
4.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.
5.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
6. 국제기구·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
7. 자녀(만8세 이하,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<개정 2009.09.21., 2012.07.25.>
8.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<개정 2012.07.25.>
9.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·배우자·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
10.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

제41조(휴직의 기간)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6.11.09.>

1. 제40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단, 교원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2.07.25.>
2.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.
3. 제40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.
4. 제40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.
5. 제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.
6.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,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09.09.21.>
7. 제40조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8. 제40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재직기간 중 총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9. 제40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연수·해외유학·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42조(휴직교원의 신분)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

③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.

제43조(휴직교원의 처우) ① 제 40조 제 1호 및 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 한다. 다만,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.

② 제 40조 제 2호 내지 제 4호와 제 6호 내지 제 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6.11.09.>

~~제44조 삭제 <2006.11.09.>~~

~~제45조 삭제 <2006.11.09.>~~

~~제46조 삭제 <2006.11.09.>~~

제47조(정년)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 47조를 준용한다. 단,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. <개정 2004.05.14.>

제47조의2(명예퇴직수당)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한 실시시기, 지급대상, 지급액, 지급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7조의3(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)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 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.

제3관 교원인사위원회

제48조(교원인사위원회 설치) 교원(총장은 제외한다)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"인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6.11.09., 2023.02.08>

제49조(인사위원회의 기능)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. 단, 정관 제39조제4항의 교원에 한한다. <개정 2015.11.19., 2023.02.08>
 2.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<개정 2006.11.09.>
 3.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23.02.08>
- 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정관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정관 제39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참작하여야 하며,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업적평가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05.02.28., 2006.11.09., 2018.11.18.>

제50조(인사위원회 조직)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, 처장 등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한다. <개정 2010.03.15., 2023.02.08.>

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제51조(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)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 <개정 2005.02.28., 2010.03.15., 2023.02.08.>

-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통리한다.
-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-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3.02.08.>

제52조(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)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 <개정 2023.02.08.>

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3조(회의록 작성)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02.08.>

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·날인한다.

제54조(인사위원회 간사)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3.02.08.>

② 간사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3.02.08.>

제55조(운영세칙)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제2절 교원징계위원회

제56조(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)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.

<개정 2022.11.15., 2023.02.08>

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3.02.08>

~~제57조 삭제 <2006.11.09.>~~

~~제58조 삭제 <2006.11.09.>~~

~~제59조 삭제 <2006.11.09.>~~

~~제60조 삭제 <2006.11.09.>~~

~~제61조 삭제 <2006.11.09.>~~

~~제62조 삭제 <2006.11.09.>~~

~~제63조 삭제 <2006.11.09.>~~

~~제64조 삭제 <2006.11.09.>~~

제3절 사무직원

제65조(자격) ① 사무직원(이하 "직원"이라 한다)은 일반직, 연구직, 기술직 및 기능직으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 <개정 2014.02.07., 2015.01.05., 2015.11.18.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을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②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다만,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, 면허증,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4.02.07.>

~~③ <삭제 2015.11.18.>~~

④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 <신설 2015.11.18.>

제66조(임용)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·승진·승급·전직·전보·강임·휴직·직위해제·면직·해임 및 파면(이하 "임용"이라 한다)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,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

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·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,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.

제67조(복무)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8조(보수)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.

제69조(신분보장)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.

제70조(정년) 일반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한다. <개정 2010.02.08.>

제71조(징계)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3.02.08.>

② ~~삭제~~ <2023.02.08.>

제7장 직제

제1절 법인

제72조(법인사무조직)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, 국장은 참여로 보한다.

- ② 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기획과를 두며, 각 과장은 부참사로 보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절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대학

제73조(총장 등) ①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대학에 총장을 둔다. <개정 2023.02.08.>

- ②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.
- ③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대학에 2인 이상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,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하거나 또는 부참사 이상으로 보할 수 있다.<개정 2022.11.15., 2023.02.08.>
-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<개정 2006.11.09., 2009.09.21.>

제74조(하부조직) ① 대외협력처·교학처·사무처·기획처를 둔다. <개정 2010.02.08, 2012.04.20,

2015.01.05., 2016.05.18., 2023.02.08.>

② 교학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, 대외협력처장, 사무처장, 기획처장은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또는 부참사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.

<개정 2010.02.08, 2012.04.20, 2012.07.25, 2015.01.05., 2016.05.18.>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<개정 2004.03.16., 2004.05.14., 2005.02.28., 2006.11.09.>

제74조의2(산학협력단) ①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15.01.05., 2023.02.08>

②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웅지세무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신설 2015.01.05.>

제75조(부속시설) ① 대학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으며, 법인사무국 내에 설립자실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2.11.15.>

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또는 사무직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2.07.25.>

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09.09.21.>

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6.11.09.>

제76조(도서관) ① 도서관에 수서과,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부참사로 보하고,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절 정원

제77조(정원)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.

<개정 2016.05.18.>

제8장 보칙

제78조(공고)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,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,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한다.

제79조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제80조(설립당초의 임원)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직 위	성 명	생 년 월 일	임기	주 소
이사장	박윤희	1968. 01.18	4	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-21 신동아(아) 12-102
이 사	송상엽	1966. 09.01	4	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-21 신동아(아) 12-102
이 사	신영재	1938. 05.30	4	광주시 동구 학동 750-1 삼익세라믹(아) 2-703
이 사	김소남	1938. 06.18	4	광주시 남구 월산동 110-5 신우(아) 8-201
이 사	박종후	1941. 06.10	2	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832 금호베스트빌 254-1501
이 사	이수철	1949. 09.25	2	인천시 부평구 창천동 176 대우(아) 107-903
이 사	오성일	1965. 09.14	2	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927 반포(아)113-102
감 사	황용현	1959. 07.07	2	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15 임광(아) 6-310
감 사	황영식	1961. 03.06	1	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7-1 미성(아) A - 801

부 칙 <1판-제정 2003.03.05.>

이 정관은 2003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판-개정 2004.05.14.>

이 정관은 2004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3판-개정 2005.02.28.>

이 정관은 2004년 0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4판-개정 2005.02.28.>

이 정관은 2005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5판-개정 2006.11.09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의 규정은 2006년 11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선임기간의 예외) 개정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.

제3조(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) 개정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의 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.

부 칙 <6판-개정 2009.09.21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의 규정은 2009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)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의장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의 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.

(7판-개정 2010.02.08. 부칙 누락)

부 칙 <8판-개정 2010.03.15.>

이 정관은 2010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9판-개정 2012.03.16.>

이 정관은 2012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(10판-개정 2012.04.20. 부칙 누락)

부 칙 <11판-개정 2012.07.25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단 제5조는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임강사에 대한 경과 조치) 종전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전임강사는 이 개정 정관에 따라 조교수로 보며,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.

부 칙 <12판-개정 2012.10.25.>

이 정관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13판-개정 2014.02.07.>

이 정관은 2014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14판-개정 2014.02.27.>

이 정관은 2014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15판-개정 2015.01.05.>

이 정관은 2015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16판-개정 2015.11.18.>

이 정관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(17판-개정 2015.11.19. 부칙 누락)

(18판-개정 2016.05.18. 부칙 누락)

(19판-개정 2016.05.19. 부칙 누락)

부 칙 <20판-개정 2017.05.26.>

이 정관은 2017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1판-개정 2017.08.22.>

이 정관은 2017년 0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2판-개정 2018.10.30.>

이 정관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(23판-개정 2018.11.18. 부칙 누락)

부 칙 <24판-개정 2018.12.26.>

이 정관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5판-개정 2022.11.29.>

이 정관은 202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6판-개정 2023.02.08.>

이 정관은 2023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1)

법 인 일 반 직 정 원

총	계	7명
	일반직계	6명
	4급 (참사)	1명
	5급 (부참사)	1명
	6급 (주사)	1명
	7급 (부주사)	1명
	8급 (서기)	1명
	9급 (부서기)	1명
	기능직계	1명
	10 등급계	1명
	운전기사보	1명

(별표2)

학 교 일 반 직 정 원

총	계	81인
	일반직계	65인
	2급 (참 여)	2명
	3급 (부 참 여)	2명
	4급 (참 사)	2명
	5급 (부 참 사)	6명
	6급 (주 사)	8명
	7급 (부 주 사)	10명
	8급 (서 기)	15명
	9급 (부 서 기)	20명
	기술직계	2명
	5급 (사서부참사)	1명
	9급 (사 서 보)	1명
	기능직계	14명
	8등급계	2명
	운전기사	2명
	9등급계	6명
	건축기사보	2명
	전기기사보	2명
	수도기사보	2명
	10등급계	6명
	경노무원	6명